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31
홈 페이지 www.ghf.or.kr



경북행복 BRIEF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 2025

Vol. 57

01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 효과성 분석

권용신 |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엄태영 |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2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손능수 | 경북행복재단 연구위원

0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가

안교철 |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 효과성 분석

책임연구원 | 권용신(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엄태영(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연구목적

-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서로 돕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이웃사촌 복지 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주민 주도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함
- 본 연구는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 추진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공방안을 모색함
 - 더불어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설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이웃사촌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추진체계

- 문헌연구 단계 :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지침과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통해 연구방향 설정함
- 주요개념 모색 : 지금까지 개별 사업효과성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문헌연구 등을 통해 이웃사촌복지센터 효과성 검증을 위한 주요개념을 설정함
- 사업효과성 측정개념 도출 : 전문가 자문회의 과정(FGI)을 통해 주요개념 및 측정하기 위한 척도 도출 및 결정함
- 양적조사 분석 :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자 및 미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효과성을 검증함
- 결론 및 제언 도출 :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안 모색

그림 1. 연구추진체계

구분	추진과정 및 내용	연구방법
1단계	·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운영지침,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구방향 설정	문헌연구
2단계	· 사업효과성 검증을 위한 주요 개념 도출 ·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활용 척도 결정 · 활용척도 중심의 전문가 자문 실시	주요개념 도출
3단계	·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자 및 미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 결과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검증	양적조사 연구
4단계	·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및 추진방안 · 후속연구 제안	제언도출

· 이웃사촌복지센터의 핵심 기능은 “지역주민공동체 지원”이며, 시·군에 설치된 이웃사촌복지센터의 핵심 기능과 추진 사업은 주민조직화, 주민역량 강화, 마을복지계획 지원, 위기가구지원 연계, 연계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타 자율사업 (지역특화사업 연계) 영역으로 구분됨

표 1. 이웃사촌복지센터의 기능과 주요사업

핵심기능	사업	세부사업
지역주민 공동체 지원	주민조직화	· 공동체 결속력 강화 · 주민모임 형성 및 활성화 · 협력적 활동·사업 촉진 ·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형성 · 마을육성사업(공유경제마을 육성, 지역사회돌봄조직) · 마을리더 양성
	주민역량 강화	· 주민대상 공동체 의식 함양 · 복지의식 교육 · 주민활동능력 계발·강화 · 주민공동체 활동기술 교육 · 주민주도 마을사업 개발 ·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마을복지계획 지원	· 지역공동체 및 복지비전 공유 · 주민주도 지역 특화사업 개발, 추진 · 소생활권 단위 주민주도 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지원 ·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정책화 · 마을복지계획 교육 및 의제 발굴 · 마을복지계획 실천자문
	위기가구지원 연계	· 긴급위기가구 발굴·통합 지원
	연계협력 지원체계 구축	·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 및 지원 네트워크 촉진 · 인적·물적 지원체계 구축

출처 : 경북행복재단(2021); 경북행복재단(2022).

3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주요개념

- 지역주민들이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수행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이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주요한 사업효과로 보고, 이를 양적조사를 통해 검증하고자 세부사업 중에 지역주민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주요개념을 도출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5개의 개념을 도출 및 활용함
- 주요 개념 정의
 - ▶ 공동체 의식 : 공동체 의식은 이웃 간 느낄 수 있는 소속감이자 서로를 중요시 여기고,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함으로써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볼 수 있음(McMillan & Chavis, 1986).
 - ▶ 이웃유대 : 이웃유대는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웃집에 방문하며 필요한 경우 정신적,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친밀감이나 소속감, 신뢰감을 의미하게 됨(김영미, 2010).
 - ▶ 주민참여 : 주민참여의 개념은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련의 활동임(Ehrlich, 1997).
 - ▶ 동네애착 : 동네애착은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애착과 행동적 애착으로 구분되고 이웃이 되어서 동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동네 애착은 그 정도가 낮다면 자신의 동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게 됨(Woldoff, 2002).
 - ▶ 사회적 고립감 : 사회적 고립은 대체로 사회적 관계의 규모와 관련된 객관적 고립과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 고립으로 개념화됨
 - 특히 객관적 고립은 가족과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Townsend & Tunstall, 1974), 그리고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정도 의미임(Marsden, 1987).

4 주요 분석결과

- ▣ 조사대상 : 총 389명(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有 306명 / 이용경험 無 83명)
- ▣ 조사기간 : 2023. 5. 16.(화) ~ 6. 30.(금)
- ▣ 설문조사 : 이웃사촌 공동체 의식 정도(5점 척도), 이웃간 유대관계 정도(5점 척도), 마을참여활동 인식 정도(5점 척도), 동네 애착 정도(5점 척도), 사회적 고립 정도(4점 척도), 이웃사촌복지센터에 대한 인식(6개 문항)

1) 공동체 의식

-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따라 공동체 의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함
-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공동체 의식척도의 평균값은 3.94점(표준편차 0.62)이었고,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공동체 의식척도의 평균값은 3.49점(표준편차 0.71)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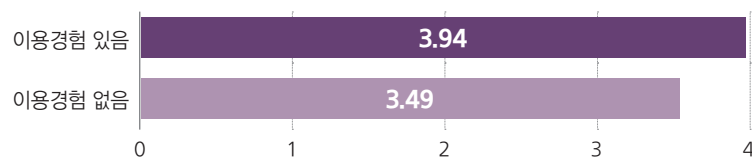
- 결국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동체 의식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2.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공동체 의식 정도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이용경험 있음	305	3.94	0.62	5.719***
이용경험 없음	83	3.49	0.71	

*** $p < .001$

그림 2.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공동체 의식 정도



2) 이웃간 유대관계

- 이웃간 유대 정도 : 이웃사촌복지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사회의 이웃 유대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383명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76점(표준편차 0.77)임

표 3. 이웃 유대 정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웃 유대 정도	383	1	5	3.76	0.77

-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이웃 유대 인식 차이

- ▶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따라 이웃 유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함
-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이웃 유대 인식의 평균값은 3.85점(표준편차 0.71)이었고,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이웃유대 인식의 평균값은 3.40점(표준편차 0.88)임
- 결국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웃 유대 인식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표 4.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이웃유대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이용경험 있음	301	3.85	0.71	4.227***
이용경험 없음	82	3.40	0.88	

*** $p < .001$

3) 마을 참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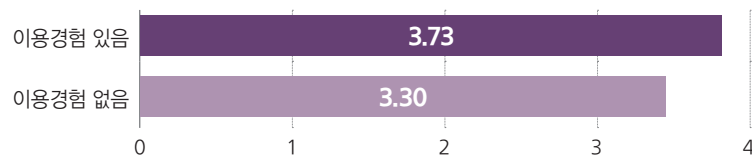
- 마을 참여활동 인식 정도 : 이웃사촌복지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사회의 마을 참여활동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389명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64점(표준편차 0.64)으로 나타남

표 5.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마을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이용경험 있음	306	3.73	0.60	5.723***
이용경험 없음	83	3.30	0.65	

***p<.001

그림 3. 마을참여 이용경험 활동 여부



4) 동네 애착

- 이웃사촌복지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사회의 동네 애착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389명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4.02점(표준편차 0.72)인 것으로 조사됨

표 6. 동네 애착 정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동네 애착 정도	389	1	5	4.02	0.72

-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동네 애착 정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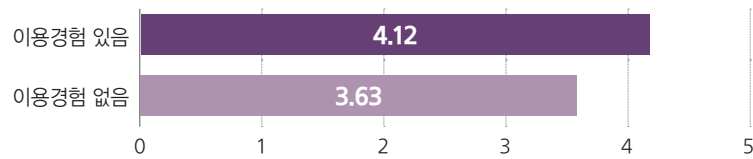
- ▶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따라 동네 애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함
 -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동네 애착 정도의 평균값은 4.12점(표준편차 0.63)이었고,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동네 애착 정도의 평균값은 3.63(표준편차 0.87)임
 - 결국에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동네 애착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됨

표 7.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동네 애착 정도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이용경험 있음	306	4.12	0.63	4.803***
이용경험 없음	83	3.63	0.87	

***p<.001

그림 4.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동네 애착 정도



5) 사회적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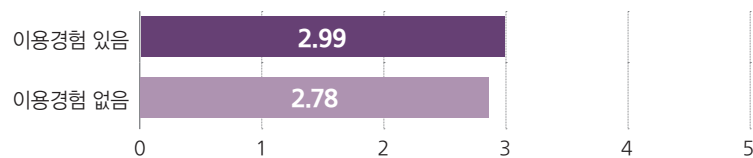
- 이웃사촌복지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고립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388명의 평균값은 4점 만점에 2.95점 (표준편차 0.47)인 것으로 나타남
-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따라 사회적 고립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고립 정도의 평균값은 2.99점(표준편차 0.47)이었고,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사회적 고립정도의 평균값은 2.78점(표준편차 0.43)임
- 이러한 결과는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고립 정도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이용경험 있음	306	2.99	0.47	3.583***
이용경험 없음	82	2.78	0.43	

***p<.001

그림 5.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고립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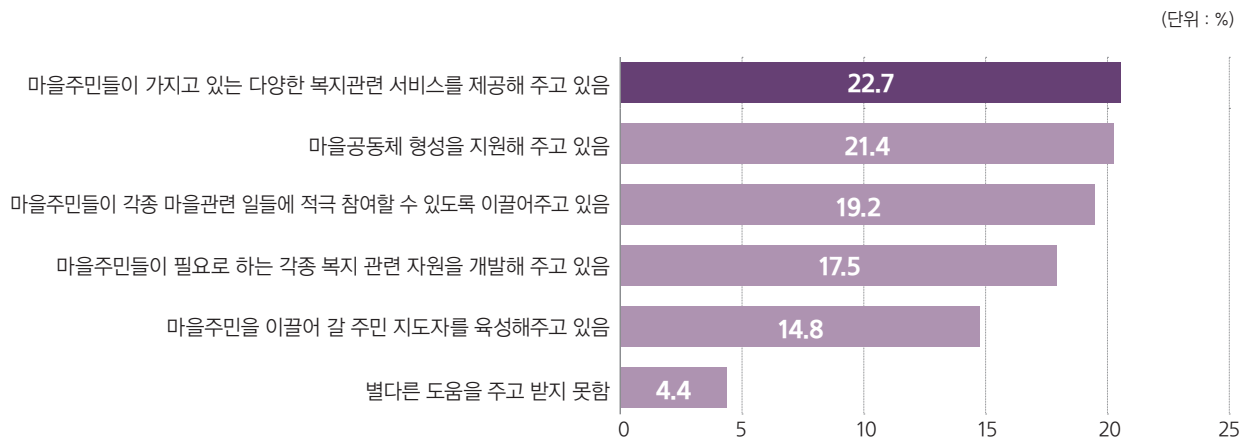
6) 이웃사촌복지센터에 대한 인식

- “이웃사촌복지센터가 마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다중응답 문항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이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함(264명, 22.7%)
 - 둘째, 이웃사촌복지센터가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해 줌(249명, 21.4%)
 - 셋째, 마을주민들이 각종 마을 관련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줌(224명, 19.2%)
 - 넷째, 주민이 필요한 각종 복지 관련 자원을 개발해줌(204명, 17.5%)
 - 다섯째, 마을주민을 이끌어갈 주민지도자를 육성해주고 있음(172명,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9. 이웃사촌복지센터에 대한 인식

순위	세부내용	빈도(명)	비율(%)
1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264	22.7
2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해 주고 있다	249	21.4
3	마을주민들이 각종 마을 관련 일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224	19.2
4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 관련 자원을 개발해 주고 있다	204	17.5
5	마을주민을 이끌어 갈 주민 지도자를 육성해주고 있다	172	14.8
6	별다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51	4.4
계		1,164	100.0

그림 6.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공동체 인식 정도



5 연구 제언

- 이용자 대상 패널 구축 : 장기간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을 통한 이용자들의 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다양한 변화들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패널조사 방식을 적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효과성을 분석할 수도 있고, 전체 이용자 대상 빅데이터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
- 주민 욕구조사와의 연계 : 각 이웃사촌복지센터별로 주민대상 욕구조사 실시 과정에서 사업 효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념들을 사전에 측정하여 사업 이용 후에 변화된 부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
-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수행 기반 조성 가능함
 - 특히 주민공동체 인식확대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마을리더 양성 및 마을참여활동 확대 등 프로그램, 사회적 고립감 감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등 기존의 이웃사촌복지센터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및 활용함
- 이웃사촌복지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 : 센터의 주요한 역할인 서비스 제공,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주민들의 참여 유도, 자원개발, 마을리더 양성 등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슈퍼비전 체계 등을 갖추어야 함
-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 이웃사촌복지센터에 부합되는 척도를 개발하여 사업효과성 측정 활용이 필요함
- 남성 지역주민의 참여 증대 :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자 중에 여성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여성비율이 높지만, 절대적으로 남성비율이 낮은 지역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청장년 대상 접근의 확대 : 대체로 노년층이 많음
 - 경상북도가 지속적인 청장년 인구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이웃사촌복지센터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사별에 대한 접근 확대 : 조사대상 중 25.7%가 사별한 독거가구로 개별적 서비스 제공, 홀로 생활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이웃 간의 지지를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이 필요함
- 저소득계층의 마을참여 활동 확대 : 조사결과 일반계층보다 저소득계층이 인식정도가 낮았음
 - 센터 이용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이 마을참여 활동에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으므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마을리더의 이웃유대 접근 확대 : 조사결과 마을리더가 마을리더 아닌 대상보다 이웃유대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았음
 - 마을리더들이 지역주민보다 오히려 마을주민들과의 사회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접근 확대 : 장애가 있거나, 독거인 상황, 저소득층 등일 때 사회적 고립정도가 매우 심함
 -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고립위험 해소를 목표로 두고 있으므로 개별상담, 집단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등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 경북행복재단(2021).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경북행복재단(2022).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 평가지표 개발 연구.
- 박찬웅·배영(2016).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과 우울 : 연결망의 유형과 크기 밀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9(4). pp.61~77.
- 박혜영·김정주(2012).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pp.47~66.
-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pp.75~93.
- 한준·김석호·하상웅·신인철(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pp.1~24.
- 홍현미라(2016). 한국형 동네응집력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7(2). pp.139~158.
- Ehrlich, T. (1997). "Civic learning: Democracy and education revisited". Educational Record. 78(3/4): 57~65.
- Marsden, P. V.(1987). "Core discussion networks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22~131.
- McMillan, D.W., & Chavis, D.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 6~23.
- Townsend, P., & Tunstall, S. (1973). "Sociological explanations of the Lonely", The Social Minority, 240~266.
- Woldoff, R. A.(2002). "The Effects of Local Stressor on Neighborhood Attachment", Social Forces. 81(1): 87~116.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2023)'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스페셜코멘트 ·

SPECIAL COMMENT



오늘날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복지 실천은 보편적 접근과 맞춤형 대응이 공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복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북도가 운영 중인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이웃사촌 복지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공동체 의식, 이웃 유대, 동네 애착, 주민참여, 사회적 고립감 등 다차원적 요소를 분석해 그 성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주민이 공동체 의식, 이웃 유대, 마을 참여 활동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는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간 신뢰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고도화와 함께 표준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효과성 분석은 그러한 방향성에 확신을 부여하는 값진 성과이며, 지역복지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일대학교 사회복지실무학과장 배 영 자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책임연구원 | 손능수(경북행복재단 연구위원)

1 개요

1)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의 의의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의하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함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함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표 1. 중대재해의 정의와 적용대상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따른 산업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용자, 일반시민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에서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에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사회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말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인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과 어린이집(43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요구됨.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음

2) 목적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분야 컨설팅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추진배경

-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2020. 1. 9. 시행)에 따른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요구 증가
-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고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에 대한 이행 필요
- 2022년 50인 이상 시설<도내 적용시설(총 122개소) : 노인요양시설 60개소, 어린이집 62개소>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
- 2023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상 컨설팅을 진행할 것을 요청함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음. 이로 인해, 경북도 내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적용대상이 되었음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2024년 10월 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실시

4) 추진경과

- 2020년 11월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45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
- 2021년 1월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 2022년 | 50인 이상 시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024년 1월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시설로 대상 확대
- 2024년 10월 | 경북행복재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실시

2 수행과정 및 성과

1) 사업성과 : 2개소, 총 4회 컨설팅 실시

표 2. 대상별 사업성과

대상	사업량	시설명	비고
노인요양시설	1개소, 각 2회	OOO실버힐	공중이용시설 ¹⁾
어린이집	1개소, 각 2회	OO어린이집	

2) 수행방법 및 내용

- 수행방법
 - (사업안내) 해당 시설 방문일정 사전 협의 및 시설 방문 일정 등 안내
 - 대상시설 총 2회 현장 방문, 대면 컨설팅 실시
- 수행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 명령 등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문서 보관 등
- 분석·진단모델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

1)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시행령 제2조)의 시설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000㎡이상,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30㎡이상

· 중점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양식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사항 점검을 통해 여부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관리에 대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업무담당자 등의 면담 및 교육을 통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컨설팅 진행 *경영책임자 면담 필수
-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등 이행되도록 개선방안 제시

표 3. 방문 회차별 컨설팅 내용

대상	컨설팅 핵심사항	컨설팅 세부내용
① 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안내 ■ 위험성평가(수준진단)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근로자 참여 ■ 경영책임자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 사업장 기본 정보 파악 적정 확인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 계획 등 적정 확인 • 위험성평가 운영수준 현황 파악 등 적정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 사항 확인 등 적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설비 보유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현황 등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면담 및 의지 적정 • 근로자 참여 현황 등 적정 확인
② 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소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점검 ■ 경영책임자 리더십 ■ 종합강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결과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 등 실행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소 점검 등 실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조치, 도급관리,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 등 실행의 적정성 • 컨설팅 사항 종합 강평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에 대한 지속적 개선 방안 제시 • 경영책임자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지 확인

표 4. 시설별 수행과정 및 내용

대상 시설	일자	주요내용
OO어린이집(1차)	10.10(목)	체크리스트 설명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OOO실버힐(1차)	10.10(목)	체크리스트 설명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OO어린이집(2차)	11.07(목)	1차 컨설팅 결과 개선사항 확인 및 피드백
OOO실버힐(2차)	11.07(목)	1차 컨설팅 결과 개선사항 확인 및 피드백

3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결과

1) 어린이집 컨설팅 결과(1차)

- 사업운영 현황 청취
 -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해당되는데, 근로자(교사) 38명으로 해당됨
 - 중대시민재해는 시민이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면적 430㎡ 이상이면 해당되는데, 면적 480㎡이므로 해당됨.
 - 이용자(원생)은 장애어린이 66명, 3년 이내 재해발생 없음
- 운영실적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시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문서 보관
- 개선과제 안내
 - 어린이뿐만 아니라 종사자(교사)도 소방훈련을 해야함
 - 매뉴얼 등 어린이뿐만 아니라 종사자(교사)에 대한 것도 마련해야 함.
 - 종사자 의견 청취는 30인 이상이어서 노사협의회 하고 있으므로 반기별 회의록에 포함하면 됨
 - 기존 방식에서 중대재해 관련 근로자의 의견을 보완
 - 위험성 평가
 - : 기계실 관계자 무단 출입시 떨어지거나 부딪힐 위험, 투명 유리문 출입시 부딪히거나 손가락 끼일 위험, 목욕실 이용자 바닥 미끄러워서 넘어질 위험 등

2) 어린이집 컨설팅 결과(2차)

- 사업운영 현황 청취
 -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해당되는데, 근로자(교사) 38명으로 해당됨
 - 중대시민재해는 시민이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면적 430㎡이상이면 해당되는데, 면적 480㎡이므로 해당됨
 - 이용자(원생)는 장애어린이 66명
 - 3년 이내 재해발생 없음
- 운영실적 확인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함(1층 복도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 평가는 실시
 - 주로 소방, 영유아 사고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 작성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미비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기록 보완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의무교육 이행 여부 확인 점검 미비
- 개선과제 안내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주기적 검토(최소 6개월 이상)
 -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 : 이동식 사다리 등 실제 위험성이 높은 요인을 찾아 평가 관리
 - 기존 매뉴얼을 활용하여 재해 발생 시 작업증지, 근로자 대피 등 내용 보완 →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조치·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전개 등

3) 요양원 컨설팅 결과(1차)

- 사업운영 현황 청취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인상 해당되는데, 현재 근로자(종사자) 57명으로 해당됨
 - 입소자(노인)는 80명
 - 중대시민재해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기준 면적 1,000㎡ 이상인데, 면적 1889.63㎡으로 해당됨
 - 이용자는 노인 80명, 3년 이내 재해발생 없음
- 운영실적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시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문서 보관
- 개선과제 안내
 -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수가 같아야 함
 - 종사자 의무교육 시 안전·보건 내용 추가
 - 재난상황대응훈련에서 안전·보건 내용을 보완
 - 재난 대비 매뉴얼에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내용 포함
 - 안전보건예산 편성
 - 위험성 평가
 - : 기계실 관계자 이외 무단 출입시 떨어지거나 부딪힐 위험, 투명유리문 출입 시 유리부에 부딪히거나 손가락 끼일 위험, 배전반 문 개폐, 접촉 시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등

4) 요양원 컨설팅 결과(2차)

- 사업운영 현황 청취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인상 해당되는데, 현재 근로자(종사자) 57명으로 해당됨
 - 입소자(노인)는 80명
 - 중대시민재해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기준 면적 1,000㎡ 이상인데, 면적 1889.63㎡으로 해당됨
 - 이용자는 노인 80명
 - 3년 이내 재해발생 없음
- 운영실적 확인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 기사·안내 등 미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는 실시
 - 중대산업,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됨. 이외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됨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미비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기록 보완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의무교육 이행여부 확인 점검 미비
- 개선과제 안내
 -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은 모든 구성원이 알수 있게 게시·안내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주기적 검토(최소 6개월 이상)
 -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로 위험요인 확인·개선(반기 1회 이상)
 - 매뉴얼에 대한 교육 등으로 전체 공유→실질적 운용성, 작동성 향상
 -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조치·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전개 등

5) 성과 및 개선과제

· 컨설팅 사업 평가

표 5.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사업 관련 수행기관 피드백

구분	주요내용
OO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에 대해 부담을 느꼈으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컨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음. 교사들에게도 교육하여 주의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봄 - 위험성평가 등 많은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관리자와 교사들 인식 속에 스며들게 하고자 함 - 계단 이용 시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들었음 - 그동안 어린이들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종사자(교사)에 대한 관리도 하고자 함 · 컨설팅 수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보다 많이 편성되어 많은 시설에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컨설팅 후의 사후점검 과정(1년에 1회)도 필요함 - 교사 대상 교육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반복해야 함
OOO실버힐 (요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컨설팅 회수 증가 필요 - 시설 수준에 따른 대응 필요 - 초기에 컨설팅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관해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고, 특히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음 - 의견수렴을 통해 더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음 · 컨설팅 수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평가를 보다 세밀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대상 매뉴얼 필요함 - 시설 자체적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만들면 좋을 듯함

4 향후 사업 추진 방향

1) 재단 내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역량 강화 과제

- 2024년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실시
- 외부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컨설팅 진행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역량을 갖춘 컨설팅 인력 양성 필요

2) 사업 결과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확대 필요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2개소 총 4회 진행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어서 경북도내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적용 대상이 되었음
- 사회복지시설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의 대폭 확대 필요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2024)'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스페셜코멘트 ·

SPECIAL COMMENT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인명사고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근로자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등)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000㎡ 이상)과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며, 동시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시설 및 법인은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이다.

경북행복재단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으며, 이후에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설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의 선도적 의미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보건안전연구소 대표 이윤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가

책임연구원 | 안교철(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1) 평가개요

1) 목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 실태와 추진 상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지원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사회서비스 질 향상 도모

2) 개요

- (평가대상)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12개소) :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칠곡, 울진
- (대상기간) 2021. 1. 1. ~ 2023. 12. 31. (3년마다 평가 실시)
- (평가주체) 경북행복재단
- (평가내용) 장애인 가족 서비스 관련 성과 평가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재정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현장평가) 2024. 8. 22.(목) ~ 8. 30.(금)
- (평가항목) ① 성과 ② 사업기반 ③ 인적자원관리 ④ 재정 및 문서관리 ⑤ 서비스

3)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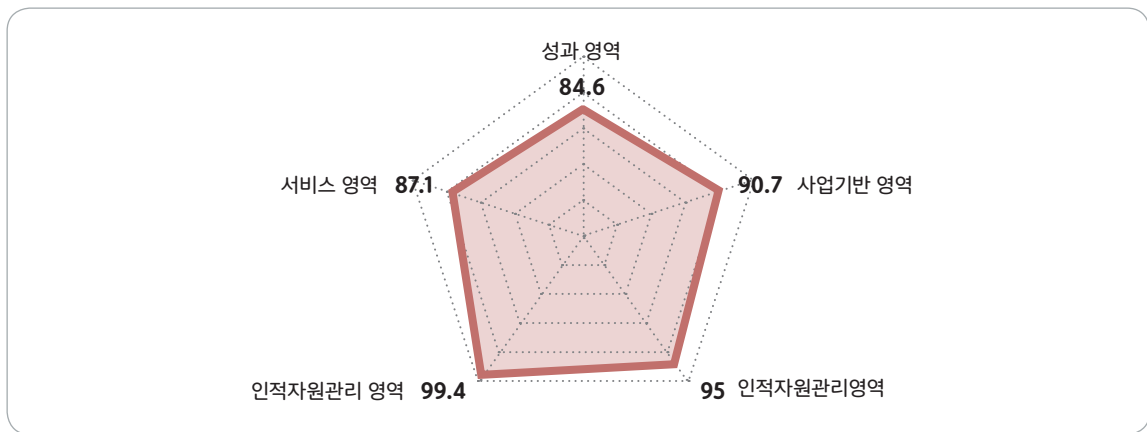
· (결과개요)

평가지표	평가결과	성과평가결과	
		배점	결과(2021~2023 평균)
성과		20	16.8
사업기반		25	22.7
인적자원관리		25	23.8
재정 및 문서관리		10	9.8
서비스		20	17.4
총계		100	90.5

2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가 결과

1) 평가 결과 요약

- 2021년 평가지표(3차평가)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평가지표,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환경 점검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2024년(4차평가)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2개소의 사업 수행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12개 시군센터는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90.5점으로 “우수” 수준으로 평가됨¹⁾
- 센터별 평가등급판정 결과, “우수” 등급 7개소, “양호” 등급 3개소, “보통” 등급 2개소로 나타남
- 영역별 평가결과, 사업기반 영역 90.7점, 인적자원관리 영역 95점, 재정 및 문서관리 영역은 98.3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 성과 영역은 84.6점, 서비스 영역은 87.1점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지표별 평가내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결과	
전 체 총 합		100	90.5	
A 성과	장애인가족건강성 지원	센터는 장애인가족 건강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5	3.7
	서비스 제공 실적	센터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5	4.4
	자원 개발 실적	센터는 다양한 외부 자원개발을 통해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5	4.8
	특성화 및 차별화 노력	지역 및 이용자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5	3.9
	총 점		20	16.8
B 사업기반	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센터는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4.4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센터는 이용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5	4.5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센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적 및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5	3.8
	운영규정 관리	센터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식성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지침에 따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5	5
	이용자 권리보장	센터는 적극적인 이용자 권리보장을 실천하고 있는가?	5	4.9
총 점		25	22.6	

1) 90~100점 : 우수, 80~89.9점 : 양호, 70~79.9점 : 보통, 60~69.9점 : 미흡, 60점 미만 : 매우미흡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결과	
C 인적 자원 관리	직원의 전문성	직원은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5	5
	직원의 근속기간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는가?	5	4.3
	교육훈련	센터는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5	4.7
	공개모집 및 채용	직원채용은 공개적이고 객관적 공정성을 지니고 이루어지는가?	5	4.9
	근로기준법 준수 및 복리후생	센터는 직원의 복무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	4.7
	총 점		25	22.6
D 재정 및 문서 관리	재무회계 관리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한 재무회계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자체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	5	4.9
	문서관리	센터는 사업수행 및 재무회계 집행과 관련된 필수적인 문서와 기록을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5	4.9
	총 점		10	9.8
E 서비스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	센터는 이용자의 자립 및 지역사회 통합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4.6
	이용자 참여	센터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참여를 보장하고 실천하는가?	5	3.8
	안전관리	센터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5	4.8
	통합 및 개방	센터는 이용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이용 정보를 개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5	4.3
	총 점		20	17.5

2) 평가 결과 총괄

▣ 종합평가 결과 “우수(90.5점)” 수준으로 평가됨

· 평가결과, 12개 센터는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90.5점으로 “우수” 수준으로 평가됨

표 1. 등급판정기준

등급	점수 기준
우수	90.0~100
양호	80.0~89.9
보통	70.0~79.9
미흡	60.0~69.9
매우 미흡	60 미만

· 기관별 평가등급판정 결과, “우수” 등급 7개소, “양호” 등급 3개소, “보통” 등급 2개소 임
- 평가 최고/최저 점수 : 최고 97점, 최저 79점

표 2. 평가등급 판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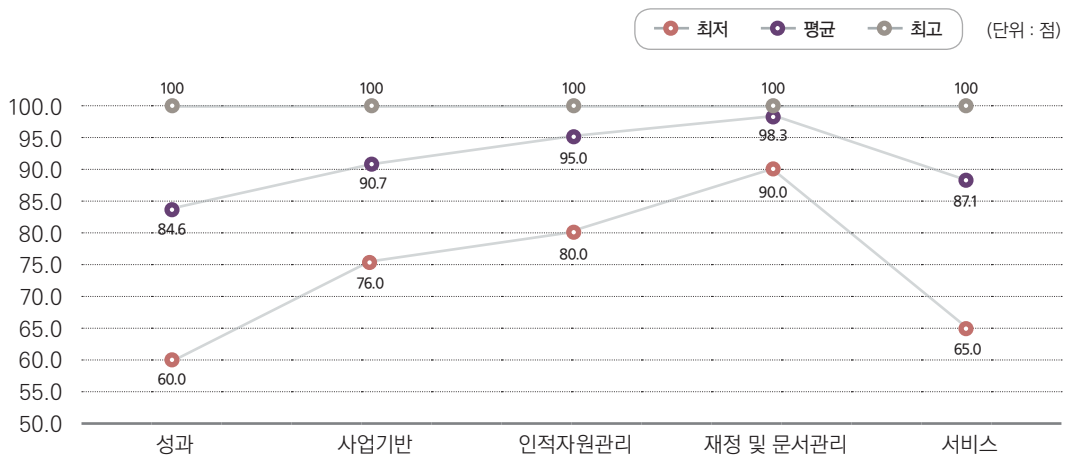
등급	현황
우수 (90~100)	7개소
양호 (80~89.9)	3개소
보통 (70~79.9)	2개소
미흡 (60~69.9)	-
매우 미흡 (60 미만)	-
계	12개소

■ 영역별 평가결과 및 등급현황

표 3.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배점기준	전체평균	100점 환산	평가등급
성과 영역	20	16.8	84.6	양호
사업기반 영역	25	22.6	90.7	우수
인적자원관리 영역	25	23.8	95.0	우수
재정 및 문서관리 영역	10	9.8	98.3	우수
서비스 영역	20	17.5	87.1	양호

- 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업기반 영역(90.7), 인적자원관리 영역(95.0), 재정 및 문서관리 영역(98.3)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 성과 영역(84.6), 서비스 영역(87.1)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영역별로 최대, 최솟값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의 지표에 최대점은 100점으로 나타났고, 최소점은 성과 영역에서 60점, 사업기반 영역에서는 76점,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80점, 재정 및 문서관리에서는 90점, 서비스 영역에서는 60점으로 나타났음

표 4. 영역별 평가내용

영역	평가내용
성과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 및 이용자를 위한 특화사업이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성과 지향적 사업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마련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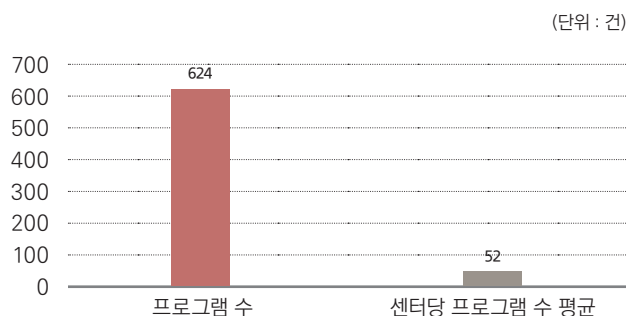
영역	평가내용
사업기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투명성 및 책임성을 위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유기능 업무를 강화하고, 사업성과 및 실적이 기록, 관리, 보고, 평가되면서 무엇보다 이용자 중심(욕구조사 결과 반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에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인적자원관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근로기준법이 준수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맞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적절한 교육 및 훈련 지원(예산편성, 교육시간 확보 등)이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음 -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근로욕구 강화를 위한 복리후생적인 부분도 계속 검토되어야 함
재정 및 문서 관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회계규칙 및 지자체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회계 집행과 관련된 필수적인 문서와 기록을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이상없이 준용하고 있음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와 직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을 기본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의견수렴(이용자 간담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 도출에 이어 지역사회통합 및 개방(지역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종합 의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우수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이상없이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지역 특화사업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우수함
- 따라서 지속적으로 환경분석 및 서비스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이용자의 높은 수요도를 대비하기 위한 차량 및 인력 지원, 인건비 상승 반영,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업주체 및 행정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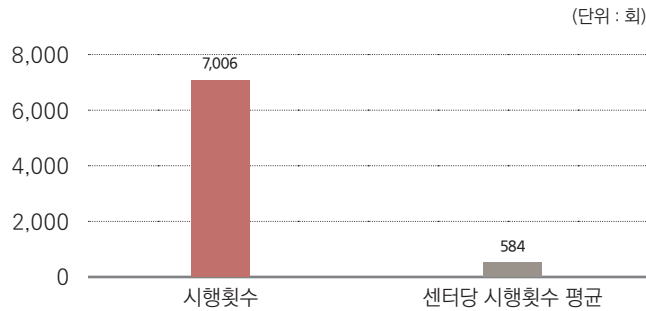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는 부모교육, 가족역량강화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상담사업, 사례관리 등이 있음
- 3년간(2021~2023)의 서비스 제공 관련 실적을 살펴보면,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수는 총 624건으로, 12개 센터가 개소당 3년 평균 52개의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1. 서비스 제공실적(2021~2023)



- 시행횟수로 살펴보면 3년간 총 7,006회를 실시했으며, 또한 12개 센터가 개소당 3년 평균 584회라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그림 2. 서비스 제공실적(2021~2023)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문화공유 등, 범 차원적인 사업을 시행 중
 - 이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써 높이 평가됨

3) 제언

▣ 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환경 보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제도의 적극적 지원 필요

- 현재 각 장애인복지 사업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의 관련 서비스 제공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음
 - 하지만 한정적인 재정과 인력으로는 이용자들의 많은 사회서비스 욕구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따라서 서비스지원을 비롯한 인력충원(인건비 증액, 복리후생 강화 등)으로 수요에 맞는 공급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이용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환경 조성을 기본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점검을 통해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 도출해야 함
 - 더 나아가 지역사회 연계활용 및 정보제공,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며 관련 사업에 대한 광고 효과 창출로 또 하나의 외부적 소통 창구 마련 필요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직원의 역량강화 필요

- 이용자와 실무자의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수행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발전 등을 위한 개선요구(정책 및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원 교육 예산 확대 편성과 교육 참여 여건 마련 등 직원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노력이 필요함
- 관련 기관들 간의 벤치마킹,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사업 발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

▣ 이용자 발굴 및 사업 저변 확대 배경 마련 검토

-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 발굴이 쉽지 않고, 기존 이용자들도 물리적 거리로 인해 사업 및 프로그램 참가가 어려운 상황임
 - 또 중복 이용자가 많아 사회참여의 한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접근성 강화 등의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속적인 후원 개발,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물적 및 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 기업,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함

▣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 수행 주체의 자발적 노력 검토

- 서비스 개선과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질적 평가와 결과 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 적극적인 사업성과 증명(특화사업 개발을 통한 사업 차별성 확보, 선도적 우수사례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확인 등)을 통한 사업수행 주체의 자발적 노력도 함께 요구됨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와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사업 효과성 향상과 사업수행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경상북도. (2024). 2024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업무편람.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가(2024)'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스페셜 코멘트 ·

SPECIAL COMMENT



경상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북 도내 관할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보편적이고 안전한 가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내 13개 센터가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가족휴식지원, 사례관리지원,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기능보완,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보안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2개 지역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도내 미설치 센터 지역에 사례발굴, 사례지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정보와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경북도에 정책 제안하여 장애인 가족의 지원체계를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장애인 가족의 서비스 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적인 재정과 부족한 인력으로 그들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배예경**



청렴(清廉) 소식지

| 경북행복재단 청렴이야기 제5호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 -

- Q**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 A** 지방의회의원은 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배우자(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함. 다만, 배우자가 단순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관련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수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알게 된 지방의회의원은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할 것임.
- Q** OO시 지방의회의원 A가 임기 개시 1년 전 회장으로 재직했던 B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 심의의결에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 A** 공직자로 채용·임용 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B단체에 보조금은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B단체에 재정적 이익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함.
- Q** OO시 지방의회의원 A의 배우자인 B가 OO시에서 공모하는 보조사업에 지원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지?
- A**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등을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아님. 보조사업의 지원 형태가 지방자치단체와 배우자 B와의 수의계약 체결 형태가 아니라면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지 않음. 다만, 지방의회의원 A의 소관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배우자인 B라면 의원 A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선진복지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인권경영 헌장

경북행복재단 임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라는 재단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and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업무나 계약 당사자, 도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지역, 학력, 나이,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 연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부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MISSION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경북형 사회통합 서비스로 지역균형 발전 선도 기관

경영철학 & 경영목표



정책선도
(Scale-UP)

도정방향 부합
정책연구비율 100%



책임복지
(Service-UP)

서비스품질 경쟁력 강화
127개 시설, 8200명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
110,000명



조직혁신
(Build-UP)

ESG 경영전략 고도화
가족친화인증 획득

전략목표 & 전략과제

경상북도 중앙 허브기관 기능강화

- 경북도 K-저출생 극복 전략 성공 주도
- 경북형 행복 중심의 고품질 정책연구 선도

생애주기별 책임복지 실현

- 도민 생애주기별 사회 서비스 실행력 강화
-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로 책임복지 실현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 ESG 책임경영으로 사회적 책무성 이행
- 포용적 조직문화 혁신으로 소통활성화·가치내재화

조직구성

정책연구사업

정책연구부

서비스 제공사업

복지지원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영시스템 관리

전부서 공통

「경북행복 BRIEF」은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APEC 2025
K O R E A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북행복재단과 함께합니다.

